

뉴질랜드의 공직 유관단체 규정 공개제도

정보신청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I. 들어가는 글

지난 2004년 지방을 순시하던 뉴질랜드의 헬렌 클라크 총리가 탑승한 차량이 규정 속도를 어겨 과속했다. 이를 목격한 주민들은 곧바로 신고를 했고, 총리는 과속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이 사례는 뉴질랜드의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보여 주는 것과 동시에 일반 시민사회에까지 뿌리내린 반(反)부정부패 의식의 한 단면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국제 비정부 기구(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하나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독일 베를린에 본부)는 매년 전 세계의 정부를 대상으로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를 측정해 발표해 왔다. 한국은 2010년, 조사대상국 178개국 중 39위를 차지했다. 동북아

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보다 순위가 높은 국가들로서는 싱가포르(뉴질랜드 및 덴마크와 공동 1위), 홍콩(13위), 일본(17위) 및 타이완(3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¹⁾ 상위권은 대부분 이른바 구미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이 차지했고, 한국은 브루나이(38위) 및 폴란드(41위) 등과 비슷하게 평가받았다. 비록 한국의 부패지수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개선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주변국 및 구미 선진국 등과 비교할 때 분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해 부패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재고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부패지수에서 상위평가를 받는 국가들의 제도 및 시스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물론 위의 뉴질랜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社会의 확고한 반부정부패 의식이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 및 기업의 청렴지수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1)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0 Results", http://www.transparency.org/policy_research/surveys_indices/cpi/2010/results(2011년 4월 4일 접속).

것은 뉴질랜드와 같이 반부패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역시 잘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10년간 국제투명성기구 조사에서 최상위권에 랭크된 뉴질랜드의 제도는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뉴질랜드의 제도는 거저 얻어진 것 이 아니다. 1984년 노동당 정부의 주도로 끊임 없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 개혁을 이끌어 왔으며, 2000년 이후에는 효율성보다는 결과 중심의 관리구조로의 변화가 추진되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공공관리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많은 정부부속 기관 및 단체들이 독립행정기관이나 공기업으로 탈바꿈했다. 그러나 각종 정부 조직의 준정부화 및 민영화 조치 등으로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위해 뉴질랜드 정부는 준정부 기관들의 다양한 입법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를테면, 공공재정법(Public Finance Act, 1989; PFA)과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 1994), 공무원법(State Sector Act 1988), 공공관리위원장(State Services Commissioner), 공기업 법(State-owned Enterprise 1986) 등을 수정 및 개정하였다. 이는 준정부기관의 거버넌스와 책임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가시적인 성과를 유도하고 공공부문의 통합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 한국의 공직유관단체들은 운영의 투명

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왔다. 그 결과로서 각 기관의 내부규정을 각각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계약, 감사 및 인사 등의 절차 등과 같은 규정을 명시해 놓았고,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의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뉴질랜드의 공직유관단체(공기업)의 관련 조항을 검토해 보고, 해당 기업들의 업무 운영 공개와 관련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II. 뉴질랜드의 정부 구조와 공기업

뉴질랜드의 공직유관단체의 운영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한국과는 다소 상이한 뉴질랜드의 정부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 뉴질랜드는 영연방(Commonwealth) 국가의 하나로, 주권자는 영국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 (Elizabeth II -Queen of New Zealand)이며, 뉴질랜드 수상의 제청에 의해 임명되는 임기 5년의 총독²⁾이 뉴질랜드 주권을 대표하고 있지만, 여왕은 평시에는 상징적인 권력만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John Key가 수상(Prime Minister)으로서 내각책임제의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뉴질랜드의 현법 및 법률체계는 본국인 영국과 유사하며, 상당부분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2) 현재 뉴질랜드의 총독(Governor-General of New Zealand)은 Anand Satyanand이며, 2006년 8월 23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다.

맞춤형 법제정보

한편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듯이, 뉴질랜드는 1980년대부터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다양한 개혁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결과로 많은 정부 기관들이 준정부 기관이나 공기업으로 구조가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의 공기업을 포함한 정부부처의 구조는 완전한 중앙정부 기구인 중앙핵심부처(Core Public Sector)와 공직유관단체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공직유관단체³⁾는 다시 독립행정기관(Crown Entities: 책임운영기관이라고도 함), 공기업(State-Owned Enterprise)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보고서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운영에 관한 업무, 회계 재정, 인사와 관련된 정보 공개 및 감사 기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공기업(State-owned Enterprise)⁴⁾

1980년대 뉴질랜드 정부의 공공서비스 개혁의 핵심은 공기업 효율성 증대였다. 1985년 노동당 정부는 전기, 전화, 우편, 상업적 삼립지구와 몇 개의 은행을 민간 기업에 매각하였다. 1985년 12월 정부는 공기업 관리에 대한 5개의 주요 원칙을 선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1986

년에 공기업법(State-Owned Enterprise Act)을 제정하였다. 공기업은 민간영역의 능률 인센티브와 공공분야의 책임성을 혼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모든 공기업의 주요 목적은 성공적인 비즈니스에 있다.⁵⁾ 뉴질랜드 공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정부 관계 부처와의 계약에 의거하여 운영되며, 그 성과 및 실적은 의회에 보고된다. 또한 공기업들은 기업보고서와 해당 기관의 성과를 철저히 검사할 수 있는 정보를 의회와 국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2. 뉴질랜드 공기업 재정 감사기구 (Crown Ownership Monitoring Unit: COMU)⁶⁾

공기업의 정부기구로부터의 독립은 효율성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만큼 정부 및 국민의 엄격한 감독하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공기업은 대부분 국익 및 국가 기반 시설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엄격히 감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뉴질랜드 정부는 재정 부분에 있어 공기업의 재무 상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3) 공직유관단체의 정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임원선임시 승인을 받는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을 말한다.

4) State Enterprise는 공기업법(State-Owned Enterprise Act 1986) Schedule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직체들을 뜻한다(SOEA section 2(c)).

5) 같은 글, 2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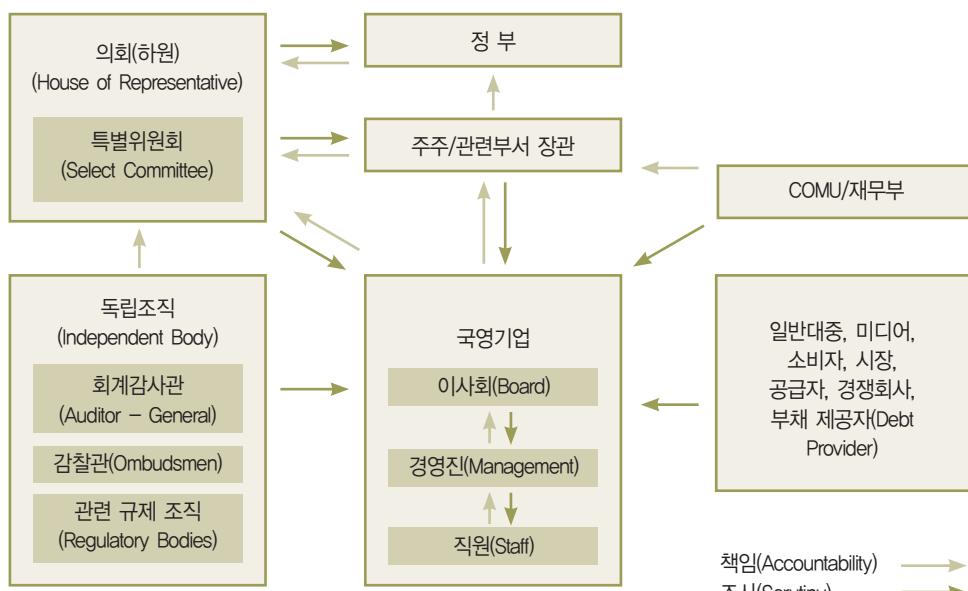
6) 이하 COMU의 관련 내용은 다음의 웹페이지에서 참조하였다. <http://www.comu.govt.nz/> (2011년 4월 15일 접속).

총 국가 재정의 포트폴리오에서 각 공기업의 재정상황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재무성 (the Treasury) 산하에 감사기구(Crown Ownership Monitoring Unit: COMU)를 두었다. 뉴질랜드 공기업의 회계 감사는 회계 감사국 국장 (Auditor-General)을 대신해 임명된 책임자가 맡는다.⁷⁾ COMU의 주요 업무는 공기업을 감사하는 것이다.⁷⁾

는 동시에 모든 관련 정부 부처들에게 필요한 조언과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각 기업의 대차 대조표에 영향을 주는 예산 및 지출에 관련된 부분이나 위험성이 높은 업무 추진 및 정부의 우선 과제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감사 역량을 집중한다. 다음은 COMU와 정부 그리고 각 공기업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이다(표-1).

(표-1)

뉴질랜드 COMU-정부-국영기업의 관계



자료: Crown Ownership Monitoring Unit(COMU)의 홈페이지

위와 같은 각 부처 및 공기업과의 관계 속에 COMU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4개의 자문 팀을 갖추고 있으며, 자문 팀은 다음

과 같다.

(a) 임명과 운영 팀(Appointments and Governance team)은 각 해당 장관들에게 위원



7) 회계 감사 책임자들의 자세한 정보는 Appendix에 나와 있는 COMU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맞춤형 법제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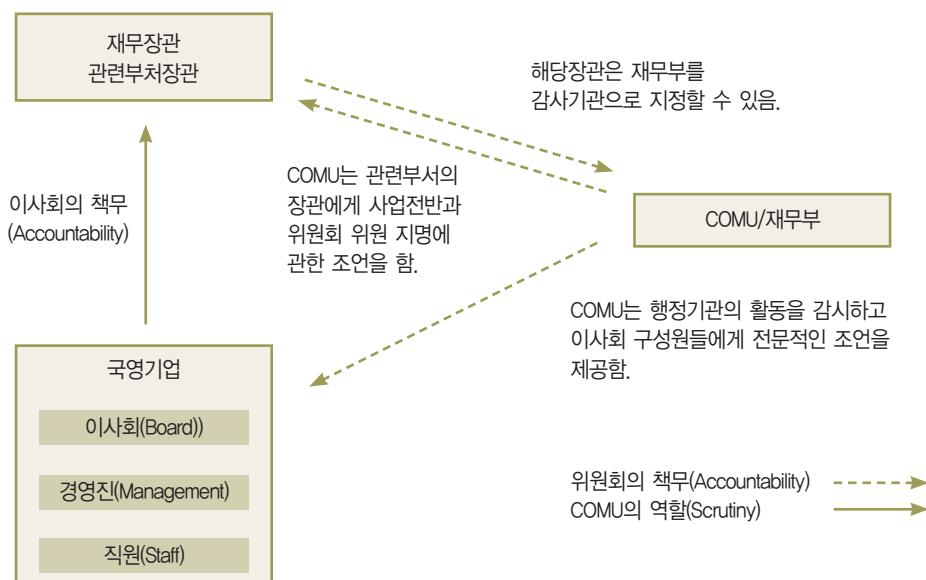
회의 위원 임명 관련 조언 및 지원을 하며, 필요한 기술 조언을 제공한다.

- (b) 부서 감사 팀(Sector Monitoring teams)은 관련 공기업을 감사하고 해당 책임 장관에게 조언한다.
- (c) 재정 분석 팀(Financial Analysis team)은 개별 공기업의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의 성과에 대한 재정 분석을 담당한다.

(d) 부서 성과 및 대차대조표 분석 팀(Sector Performance and Balance Sheet team)은 각 해당 부서의 대차대조표를 확인하여 각 공기업의 현재 운영 상태 및 개선할 부분의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COMU는 공기업의 보고서에 대한 책임을 갖는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조언하는데, 다음의 <표-2>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표-2>

COMU와 국영기업 이사회와의 관계



자료: Crown Ownership Monitoring Unit(COMU)의 홈페이지

즉 COMU는 공기업의 위원회에 대한 감사 및 조언을 동시에 제공하는 한편, 공기업의 보고서를 제출 받을 해당 장관들에게도 해당 공기업에 사업 및 이사회 위원의 지명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기업에 대한 감사의 투명성을 높이

는 일환으로 COMU는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 접근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경우 해당 공기업의 실적 및 성과에 대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나, 그 외의 관련 조직의 경우에는 각각 차별화된 정보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음 <표-3>은 각 부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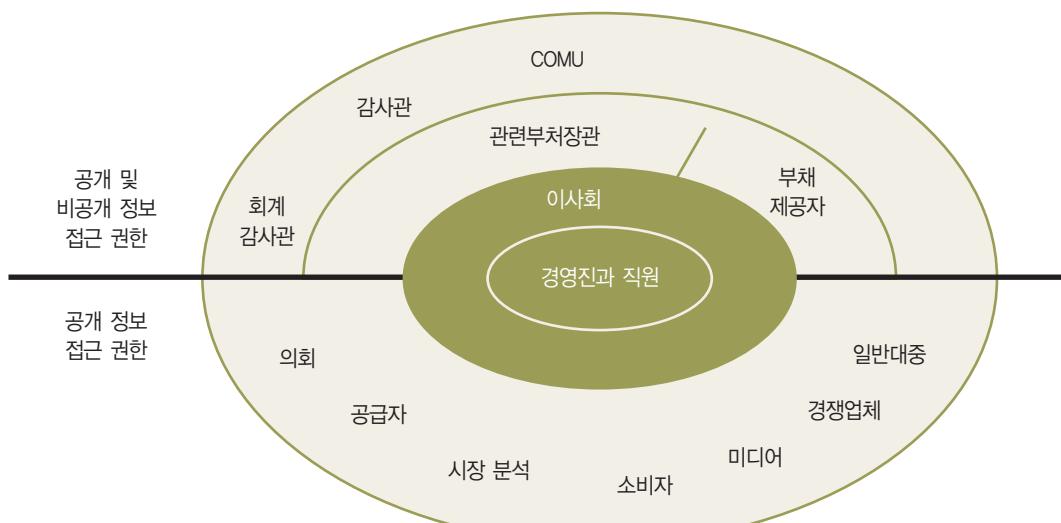
정보 접근 권한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앞선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COMU는 공기업의 이사회에 대한 조언과 감사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관련부처 장관에게 역시 조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COMU는 기본적으로 관련부처 장관에 비해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 권리가 적어 월권할 가능성은 제거

했다. 또한 다음의 <표-3>에서 볼 수 있듯이, 공기업의 정보 중 공개 가능한 정보일 경우에 의회와 공공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개정보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업무 상황, 언론 자료, 위원회 및 장관 지명자에 대한 브리핑 자료 등을 포함하며, 뉴질랜드 전자 문서 규격에 따른다.

<표-3>

COMU가 지정한 국영기업 정보접근 권한



자료: Crown Ownership Monitoring Unit(COMU)의 홈페이지.

감사기관으로서 COMU 역시 해당 업무에 대한 정보를 공개, 출판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되는데, 이는 감사기관에 지나친 권력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일반 공공에 대한 감시기능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COMU는 매년 12월 연간 포트폴리오를 포함한 다양한 보고서를 발간한다. 다음은 COMU

가 공개, 출판하는 문서이다.

- (a) 평가보고서(Valuation Report): 1986년 제정된 공기업법(State-Owned Enterprises Act 1986)에 따르면 공기업은 존립 목적의 하나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함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국영 기업의 위원회는 국영 기업에 지출된 정

맞춤형 법제정보

부 지출(Crown's Investment)을 평가(estimate)해야 하며, 매년 경영 정책 보고서(Statements of Corporate Intent: SCI)에 그 평가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지난 몇 년 동안(Over the past few years) 일부 공기업의 평가보고서가 COMU에 의뢰되었다. 각각의 평가 보고서(Individual valuation report)는 COMU에 의해 제공되며, 수년 내에 뉴질랜드 정부 메이저 공기업의 경우에도 COMU가 독립적인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게 될 것이다.

(b) 신임장관에 대한 업무 보고 자료의 출판: 내각 내에 신임 장관이 지명되면, COMU의 관련 부서의 최고 정책 결정자(the Chief Executive of the Department)는 신임 장관의 업무가 시작되면 즉시 해당 부처의 상황과 포트폴리오를 브리핑해야 한다. 이러한 브리핑은 몇 주에 걸쳐 공식 서면 및 대면 등의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공식 서면 브리핑은 이른바 신임장관 브리핑(the Briefing to Incoming Ministers: BIM)으로 알려졌는데, BIM 중 해당 공식 서면 브리핑 역시

출판됨과 동시에 해당 공기업의 홈페이지의 공개된다.

(c) 기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기업은 ‘공기업의 지속적인 공개규칙(the SOE Continuous Disclosure Rules)⁸⁾에 의거하여 기업의 상업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공공에게 문서를 통해 알릴 의무가 있다.⁹⁾ 해당 문서는 반드시 각 기업의 공식문서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날짜 및 공지 제목이 포함되어야 있어야 한다. 또한 홈페이지에는 Adobe사의 PDF파일 형식으로 하여, COMU가 필요시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작성된 공개 문서는 이메일을 통해 info@comu.govt.nz계정으로 보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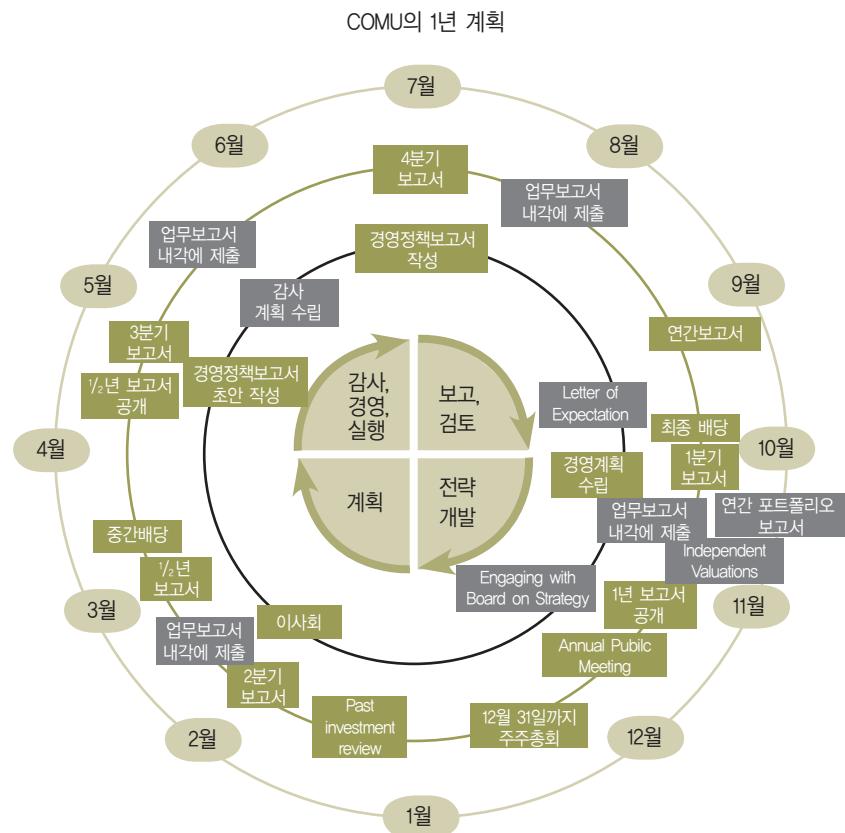
COMU는 또한 공공과 미디어에 의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의 1년 계획을 홈페이지에 올려 놓았다. 따라서 일반 감시자들은 각 시기에 따라 COMU의 업무 상황과 출판되는 보고서를 공개 가능한 수준에 한해 입수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의 <표-4>는 COMU의 1년 계획이다.



8) 지속적인 공기업 공개규칙(the SOE Continuous Disclosure Rules)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www.comu.govt.nz/resources/pdfs/disclosures/soe-discl-rules-dec09.pdf>(2011년 4월 10일 접속).

9) 이러한 의무를 가진 뉴질랜드의 공기업은 다음과 같다. New Zealand Railways Corporation, Transpower New Zealand Ltd, Meridian Energy Ltd, Mighty River Power Ltd, Landcorp Farming Ltd, Genesis Power Ltd, New Zealand Post Ltd, Solid Energy New Zealand Ltd and Kordia Group Ltd.

〈표-4〉



자료: Crown Ownership Monitoring Unit(COMU)의 홈페이지

III. 공직유관단체의 공개 정책

공기업들은 업무 및 재정 관리에 대하여 정부 및 국민으로부터 투명하게 정책이 집행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며, 정해진 때마다 성과보고서 및 재무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공직유관단체들이 자(自)기관의 사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기업의 운영 및 업무를 공개하는 것과 달리, 뉴질랜드의 공직유관단체는 이와는 약간 다르다.

1. 공기업(State-Owned Enterprises)의 공개 의무

COMU 홈페이지에는 뉴질랜드 정부가 지정한 공기업들에 관한 자격, 관련 법률에 대한 정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기업 보고서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각각의 홈페이지에는 공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의무를 가지고 있다. 모든 공기업은 업무 및 재정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각 기

맞춤형 법제정보

업의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고 있다.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은 경영정책보고서(Statement of corporate intent), 감사보고서(Audit Report) 및 연례보고서(Annual Report), 중간보고서(Halfly report, Interim Report)이다.

이 밖에 각 공기업의 경영 전략 및 사업 현황에 대해 홈페이지에 정부 표준 전자문서의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력회사인 Genesis Power Ltd.의 경우에는 자사의 홈페이지에 위의 세 가지 보고서를 공개하고 하고 있는데, 2003년부터 현재까지의 연간보고서가 회에 제출된 문서형식과 동일하게 PDF파일로 업로드되어 있다. 또한 재정보고서 1년 단위의 정기적 연간보고서 및 비정기 재정보고서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온라인상에 제공된다.¹⁰⁾

공기업의 경우 사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지는 않는다. 한국과 같은 방식의 사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대신 해당 공기업 설립의 법률적 근거 혹은 정책이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다. 이를테면 마이티 수력관리 주식회사(Mighty River Power Limited)의 경우에는 기업의 홈페이지에 이 기업 설립 근거인 1998년의 전력 개혁(Electricity Reforms 1998)이 소개되어 있고, COMU의 홈페이지에 마이티 수력관리주식회사의 법률적 토대인 공기업법(State-Owned Enterprises 1986) 및 기업법

(Company Act 1993)이 언급되어 있다. 마이티 수력관리주식회사 홈페이지에는 정부규격 전자문서 형태로서 해당 조직의 설립 목적, 정책(business principle)과 인사(Human Resource)위원회와 관련한 정보들도 문서화되어 볼 수 있도록 한다. 즉 각각의 공기업의 경우 한국과 같이 문서화된 사규는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 기관 설치 법률이 사규를 대체한다고 볼 수 있다.

(1) 공기업 위원회의 기업 보고서(Company report) 공개

i) 경영정책 보고서(Statement of Corporate Intent)

뉴질랜드 공기업법(State-Owned Enterprise Act 1986)에 의하면 공기업의 이사회는 공기업의 경영정책보고서(Statement of Corporate Intent)를 재무장관(Shareholding Minister)¹¹⁾에게 매 회계연도 개시 한 달 전까지는 제출해야 한다(Section 14). 공기업의 경영정책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기업 그룹의 목적
- (b) 경영 활동 범위와 특징
- (c) 총자산에 대한 연결 주주 자금 비율
- (d) 회계 정책
- (e) 기업의 목적과 관련된 업무 및 대상
- (f) 연간 세금 지불 비용에 관한 증명서

10) Genesis Power Ltd.의 재정보고서의 경우 해당연도의 재정보고서, 즉 2010~2011의 연간보고서와 비정기 재정보고서만이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다.

11) Shareholding Ministers는 재무(재정) 및 관련 책임 장관을 뜻한다(Section 2(c)).

(g) 장관에게 회계 연도 기간에 알려야 할 정보 등

ii) 연간보고서(Annual Report)

각 해당부서에게 연간 경영정책 보고서를 제출한 후, 회계연도가 끝난 3개월 이내에 재무장관(Shareholding Minister)에게 다시 연간보고서(Annual Report)를 제출하여야 한다(Section 15, 16). 이때 연간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공기업의 경영 및 보조업무 및 평가 보고서

(b) 회계 통합 재정증명서(재정 상태, 재정 성과, 현물 흐름 등)

(c) 회계 감사자의 재정 증명 보고서(Section 15 (1)(a)~(c), (2)(a))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c)항목이다. 이는 회계 감사자와 피감사기관의 불법적인 자금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회계 연도가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사회는 2개월을 넘기지 않고, 반년 보고서(Half-Yearly Report)를 제출한다. 이때에 회계 연도 반년 동안의 경영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보고서에는 경영정책 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Section 16(1),(2)).

(2) 공기업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들의 공개 여부

공기업을 담당하는 장관(Responsible Minister)¹²⁾은 당해 및 이월(2년) 경영정책보고서, 전년도 회계 감사 재정증명서와 연간 보고서, 감사 보고서들을 제출 받은 날로부터 5주 이내에 관보(Gazette)에 고시하도록 한다(Section 17(2A)).

(3) 인사와 관련한 규정 공개

공기업법 Section 8에는 공기업 인사에 관하여는 모든 공기업들은 고용 관계법(Employment Relations Act 2000)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은 노동부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다. 본 법에는 공기업에 고용된 직원(준 공무원)들의 지위, 인사 관리, 계약(part 4, 6)뿐 아니라 Part 5부에는 그들이 지켜야 할 규정들(Code of Good faith), 단체 교섭(collective bargaining)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4) 기타 공개에 관한 규정

회계 감사 이외에도 공기업의 이사회는 재무장관(Shareholding Minister) 또는 관련 책임자의 요구 시, 공기업 및 그들의 자회사들의 업무



12) Responsible Minister은 공기업과 관련 및 책임을 맡고 있는 장관을 뜻한다(Section 2(b)).

맞춤형 법제정보

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자료(경영정책보고서에서 요구되지 않은 정보라 할지라도)를 협의 후에 제공할 것이다(Section 18(1)). 또한 재무장관은 - 법이 규정하는 한도 내에서- 필요에 따라서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Section 18(2)). 한편, 공기업의 이사회는 직원(개인) 및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장관에게 알려야 할 의무는 없으나, Securities Markets Act 1988에 근거하여 공기업 사무실 또는 직원에게 “기업의 업무에 관한 자료”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러한 요구에 꼭 응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도 – 공기업 위원회, 공기업 직원 및 고용인 – 없다(Section 18(3) ~(5)). 또한 민감한 사항의 발표 및 폭로 방지를 위해서는 특별히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으나, Official Information Act 1982 규정 내에서 적절하게 보류될 수 있다(Section 20).

IV. 나가는 글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확산되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고 각종 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민영화를 기치로 삼는 신자유주의 바람은 뉴질랜드도 예외가 아니었다. 뉴질랜드 정부는 많은 정부 기관을 독립행정기관으로 독립시키고, 공기업에도 상당부분 민영화의 요소를 삽입해 효율적이고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정부는 효

율적인 제도를 수립하여 정부의 감독이 약해져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의 요인을 최소화하였다.

공직유관단체 및 공기업 모두 재무상태, 연간보고서 및 각 사업별 업무를 정부 규격에 맞는 서면으로 각각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또한 핵심 중요 정보를 제외하고 각각의 공직유관단체가 정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는 미디어 및 공공에 공개되도록 하였다. 뉴질랜드의 감사제도는 몇 가지를 들 수 있겠다. 첫째, 공기업의 감사를 수행하는 스텝들의 재무 상태 까지 공개하도록 하여 부패를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로, 재무성의 COMU에 강력한 감사 및 조언 기능을 부여한 것이다. COMU는 공기업에 감사와 조언을 상위 정부 부처의 장관에도 위원회 구성 및 업무에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COMU 역시 모든 업무 행위는 서면으로 공공 및 미디어 등에 공개되어야 한다. 따라서 COMU는 국민으로부터 엄격하게 감시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뉴질랜드는 영국 여왕이 여전히 국가의 상징일 정도로 영국과 깊은 유대를 갖춘 나라로서, 정부 구조 및 법률 체계 역시 영국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영국 이상으로 국가의 높은 청렴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국민의 높은 반부정부패 의식과 함께 효율적인 제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뉴질랜드의 공직유관단체에는 한국과 같이 사규 등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홈페이지에 각 조직 설립의 근간이 되는 법률이 쉽게 설명되어 있다. 또한 뉴

질랜드는 모든 법령 및 규칙들이 전자문서화되어 있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각각의 공직 유관단체에 대한 개별적인 사규가 존재하는 것 이 아니라 통합 법률로서 공직유관단체의 운영을 명시하고 있다. 즉 모든 공직유관단체는 각각의 업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계약, 감사, 인사 등의 은 통합 법률로서 규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사회, 문화, 법제 등 많은 부분이 한국과 다른 뉴질랜드이지만, 그 제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양 건 희

(해외입법조사원, 영국 Bristol 대학 박사과정)

〈Appendix〉

다음의 공기업들은 본 보고서에서 참조한 뉴질랜드의 주요 섹터별 공기업의 명단이다. 또한 웹 링크는 각 공기업의 회계 감사 책임자, 근거법, 공개된 보고서를 접속할 수 있는 COMU 홈페이지의 섹션이다.

◎ Energy & Utilities

전력주식회사(Electricity Corporation of New Zealand Limited)

State-Owned Enterprises Act 1986

<http://www.comu.govt.nz/portfolio-entities/sector/energy-utilities/electricity-corporation-new-zealand>

전력개발주식회사(Genesis Power Limited)

State-Owned Enterprises Act 1986, Companies Act 1993

<http://www.comu.govt.nz/portfolio-entities/sector/energy-utilities/electricity-corporation-new-zealand>

메리디언 에너지관리주식회사(Meridian Energy Limited)

State-Owned Enterprises Act 1986

<http://www.comu.govt.nz/portfolio-entities/sector/energy-utilities/meridian-energy/>

마이티 수력관리주식회사(Mighty River Power Limited)

State-Owned Enterprises 1986, Companies Act 1993

<http://www.comu.govt.nz/portfolio-entities/sector/energy-utilities/electricity-corporation-new-zealand>

석탄관리주식회사(Solid Energy New Zealand Limited)

State-Owned Enterprises Act 1986, Companies Act 1993

<http://www.comu.govt.nz/portfolio-entities/sector/energy-utilities/solid-energy-new-zealand>

전력거래주식회사(Transpower New Zealand Limited)

State-Owned Enterprises Act 1986, Companies Act 1993

<http://www.comu.govt.nz/portfolio-entities/sector/energy-utilities/transpower-new-zealand>

맞춤형 법제정보

◎ Environment & Facilities Services

동식물해충통제주식회사(Animal Control Products Limited)

State-Owned Enterprises Act 1986, Animal Control Products Limited Act 1991

<http://www.comu.govt.nz/portfolio-entities/sector/energy-utilities/electricity-corporation-new-zealand>

식품안전(농업 품질)관리주식회사(AsureQuality Limited)

State-Owned Enterprises Act 1986, Companies Act 1993

<http://www.comu.govt.nz/portfolio-entities/sector/environmental-facilities-services/asurequality>

농업 토지 관리주식회사(Landcorp Farming Limited)

State-Owned Enterprises Act 1986

<http://www.comu.govt.nz/portfolio-entities/sector/environmental-facilities-services/landcorp-farming>

기상서비스 주식회사(Meteorological Service of New Zealand Ltd: MetService)

State-Owned Enterprises Act 1986

<http://www.comu.govt.nz/portfolio-entities/sector/environmental-facilities-services/meteorological-service-new-zealand/>

Quotable Value Limited

State-Owned Enterprises Act 1986, Companies Act 1993

<http://www.comu.govt.nz/portfolio-entities/sector/environmental-facilities-services/quotable-value>

팀버랜드 서해안관리주식회사(Timberlands West Limited)

State-Owned Enterprises Act 1986

<http://www.comu.govt.nz/portfolio-entities/sector/environmental-facilities-services/timberlands-west-coast>

◎ Media & Communication

Kordia Group Ltd

State-Owned Enterprises Act 1986, Companies Act 1993

<http://www.comu.govt.nz/portfolio-entities/sector/media-communications/kordia-group>,

교육 미디어 주식회사(Learning Media Limited)

State-Owned Enterprises Act 1986, Education Act 1989

<http://www.comu.govt.nz/portfolio-entities/sector/media-communications/learning-media/>

우정관리기업그룹(New Zealand Post Group)

State-Owned Enterprises Act 1986, NZ Incorporated Registered Bank Order 2008,

Reserve Bank of NZ Act 1989

<http://www.comu.govt.nz/portfolio-entities/sector/media-communications/new-zealand-post/>

◎ Transportation

뉴질랜드 항공주식회사(Airways Corporation of New Zealand Ltd)

State-Owned Enterprises Act 1986, Airways operates under rules set down by the Civil Aviation Authority of NZ

<http://www.comu.govt.nz/portfolio-entities/sector/transportation/airways-corporation-new-zealand/>

철도회사(New Zealand Railways Corporation)

New Zealand Railways Corporation Act 1981, State-Owned Enterprises Act 1986

<http://www.comu.govt.nz/portfolio-entities/sector/transportation/new-zealand-railways-corporation/>